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291

발의연월일: 2024. 9. 25.

발 의 자:김한규·이원택·장철민

김태년 • 강훈식 • 백혜련

정진욱 • 박홍배 • 이재정

이건태 • 박상혁 • 박정현

모경종 · 강준현 · 박희승

서미화 · 신정훈 · 양부남

위성곤 • 손명수 • 김영화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정책처의 직무로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이하 "예산안 등"이라 한다)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등에 대한 분석 결과 제공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 등에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 등 관련 자료는 각 부처를 소관하는 기관에만 제공되거나 부처별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등 파편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국회의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기초 자료제공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포함한 예산안 등과 국회가 의결한 예산안 등을 취합·공개하여 예산안 등에 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가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정책처의 의정 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예산안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처장은 국가의 예산안·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안 등을 포함 한다)과 그에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8조의2(예산안 등 관련 자료의 |
| | 제공) 처장은 국가의 예산안ㆍ |
| | 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
| | 결산(국회가 심의・확정한 예 |
| | 산안 등을 포함한다)과 그에 |
| |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를 홈페 |
| | 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
| | 공개하여야 한다. |